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한 국 교 원 대 학 교 설 치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 이유

한국교원대학교 소속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의 월정직책급 지급 대상 보직에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소속 교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,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함에 따라 지급받는 교수보직경비의 범위를 ‘제6조의2·제7조·제8조 및 제10조’에서 ‘법령 및 학칙에 따른 보직’으로 변경(안 제11조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가”를 “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가 법령 및 학칙에 따른 보직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-6812